

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조서(변경)

■ 도시계획시설(학교) 변경결정 조서

- 홍익대학교 (육석동 캠퍼스)

사실명	사건/의혹 종류	위 치	연 가 (년)		최초 결정일	비 고
			기정	변경		
		합 계	178,198.3	1,778.1	179,972.4	-
학 교	대 학	제1캠퍼스	유급자 총합 221 일대	145,579.3	1,778.1	147,355.4
		제2캠퍼스	유급자 총합 224 일대	23,055	-	23,055
		제3캠퍼스	유급자 총합 211~22 일대	8,196	-	8,196
		제4캠퍼스	유급자 총합 190 일대	1,366	-	1,366

■ 도시계획시설(학교)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 조서

- 구역계획	
--------	--

구분	명칭	연번	기정	증감	변액	비고
관공	일반관리	1	17,765	증17,776.1	19,541.1	인책액,외책액
		2	36,649		36,646	본관,출납처로인,상대공급업체로인
		3	14,644		14,644	사무소용
		4	43,096		42,999	법정관,인책처로인
	소 계	5	12,160		12,160	가속기(물류처리용)
제1장사무	상장관리	6	11,917.3		11,917.3	명인상,영장영
		7	3,132		3,132	출납장
	소 계	8	15,049.3		15,049.3	
		9	6,249		6,249	특기보전처리용
제2장사무	관리일반관리	10	23,055	증1,776.1	147,355.6	
		11	23,055		23,055	출내부수처리
	소 계	12	46,110		46,110	
		13	3,320		3,320	특기보전출납처로인,상대공급업체로인
제3장사무	관리일반관리	14	8,196		8,196	
		15	1,366		1,366	가속기(물류처리용)
	소 계	16	1,366		1,366	
		17	178,196.3	증1,776.1	179,972.4	

- 일도계획 (건매율)

구분	한리지역	자연경관지구 (한리지역내)	조세 면제율	시설 기부	건물 면적	관리 건제율
제1캠퍼스	147,355.4	-	60.0%	36.90%	36.95%	55.0%
제2캠퍼스	23,055.0	-	60.0%	41.04%	41.04%	50.0%
제3캠퍼스	8,196.0	8,196.0	30.0%	15.76%	15.76%	25.0%
제4캠퍼스	1,366.0	-	60.0%	42.90%	42.90%	50.0%

■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결정조서 ■

- 구역별 밀도계획 (용적률, 높이)

[illegible]

※ ㉠구역, ㉡구역, ㉢구역의 이전용적률은 기고시에 미기재 되어 근화 이전용적률에 정정 반영
※ 서해캠퍼스 ㉠구역 면적증가로 인한 잔사용적률 감소(200%→180%), 이전 연면적 동일

- 거동물 주석

- 건축물조서

[illegible]

◆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-51호

수색·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(경미한)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

1.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-357호(2006.10.19)로 재정비촉진지구지정 고시되고, 제2007-177호(2007.06.07)로 변경지정, 제2008-173호(2008.05.22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, 제2010-449호(2010.12.09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, 제2011-126호(2011.05.19), 제2011-187호(2011.07.07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2-133호(2012.05.24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, 제2012-195호(2012.07.26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, 제2012-255호(2012.09.27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2-282호(2012.10.25), 제2013-76호(2013.03.14), 제2013-112호(2013.04.04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3-168호(2013.05.30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3-184호(2013.06.13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3-290호(2013.09.05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4-16호(2014.01.16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4-55호(2014.02.20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4-197호(2014.05.22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(경미한 변경)

경)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4-217호(2014.06.12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4-299호(2014.08.28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4-445호(2014.12.18)로 수색·증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6-126호(2016.04.28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, 제2016-134호(2016.05.04), 제2016-165호(2016.06.16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, 제2017-28호(2017.01.26)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7-97호(2017.03.16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, 제2018-58호(2018.03.02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8-59호(2018.03.02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결정, 제2019-26호(2019.01.17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9-143호(2019.05.09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9-216호(2019.07.04)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9-282호(2019.08.22.)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,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, 제2019-365호(2019.11.07)호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된 수색·증산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하여

2. 「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」 제12조제1항에 의거 수색·증산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(경미한 변경)하고 같은 법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합니다.
3. 「토지이용 규제기본법」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.

2020년 2월 6일
서울특별시장

가.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·유형·위치·면적 및 지정목적: 변경없음

명칭	유형	위치	면적(㎡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수색·증산 재정비촉진지구	주거지형	수색동 증산동	792,998.1	-	792,998.1	

나.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: 변경없음

다.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: 변경없음

라.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: 변경

- 1)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: 변경없음

구분	면적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792,998.1	-	792,998.1	100.0	

주거 용지	소 계	546,755.6	—	546,755.6	69.0	
	공동주택	476,172.9	—	476,172.9	60.0	
	상업용지	13,685.0	—	13,685.0	1.7	
	복합용지	34,208.0	—	34,208.0	4.3	
	주택용지	145.0	—	145.0	0.1	
	유 치 원	2,273.8	—	2,273.8	0.3	
	종교용지	6,917.4	—	6,917.4	0.9	
	존 치	13,353.5	—	13,353.5	1.7	
공공 시설 용지	소 계	246,242.5	—	246,242.5	31.1	
	도 로	110,139.6	—	110,139.6	13.9	
	보행자도로	5,596.4	—	5,596.4	0.7	
	공 원	35,047.6	—	35,047.6	4.4	
	녹 지	23,790.3	—	23,790.3	3.0	
	광 장	1,006.0	—	1,006.0	0.1	
	전기공급설비	【1.4km중0.73km】	—	【1.4km중0.73km】	—	수색~향동
	변 전 소	542.0	—	542.0	0.1	건물내부(지하)에설치
	공공청사	3,967.0	—	3,967.0	0.5	
	학 교	56,490.3	—	56,490.3	7.1	
	사회복지시설	4,221.3	—	4,221.3	0.5	
	도 서 관	3,776.0	—	3,776.0	0.5	
	문화시설	1,666.0	—	1,666.0	0.2	
	체육시설	(4,023.0)	—	(4,023.0)		복합용지내 복합화

※ 【 】 중복결정 또는 지중시설임

※ ()는 복합용지내 체육시설 복합화에 따른 대지지분(890㎡)과 부지환산면적(3,133㎡)의 합산 면적임

2) 인구주택수용계획 : 변경

구분		계획세대			인구수		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기정	변경	변경후	
합계		13,637	증) 2	13,639	37,168	증) 5	37,173	
촉진구역	소계	12,857	증) 2	12,859	34,715	증) 5	34,720	2.7인/세대 (2020서울시도시 기본 계획 세대당 인구 적용)
	40㎡이하	1,059	—	1,059	2,859		2,859	
	40~50㎡	985	—	985	2,660		2,660	
	50~60㎡	3,500	—	3,500	9,450		9,450	
	60~85㎡	5,998	증) 2	6,000	16,195	증) 5	16,200	
	85㎡초과	1,315	—	1,315	3,551		3,551	
준치관리구역	공동주택	533	—	533	1,440		1,440	
준치지역		247	—	247	1,013		1,013	

- 3) 교육시설, 사회복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계획: 변경없음
- 4) 공원·녹지 및 환경보전계획: 변경없음
- 5) 교통계획: 변경없음
- 6) 경관계획: 변경없음
- 7) 도시·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: 변경없음
- 8)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: 변경없음
- 9)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: 변경없음
- 10)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·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: 변경없음
- 11)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: 변경없음
- 12)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: 변경없음
- 13)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: 변경없음
- 14) 기타계획(방재계획, 정보화계획, 에너지순환계획, 자족성계획, 특성화계획, 여성친화적 계획): 변경없음
- 15) 광고물 관리계획: 변경없음
- 16)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: 변경없음
- 17) 재정비촉진구역별 정비계획: 변경
 - 가) 수색1~13 재정비촉진구역: 변경없음
 - 나) 증산2 재정비촉진구역: 변경
 - (1)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: 변경없음

구분	재정비촉진사업의 명칭	위 치	면 적(m ²)			비고
			기정	변경	변경후	
기정	증산2재정비촉진구역	증산동 216 일대	78,755.2	-	78,755.2	

(2) 정비계획: 변경

(가) 토지이용계획: 변경없음

구분	명칭	면적(㎡)			비율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계		78,755.2	－	78,755.2	100.0	
기반 시설	소계	23,154.1	－	23,154.1	29.4	
	도로	15,331.1	－	15,331.1	19.5	
	보행자도로	3,227.5	－	3,227.5	4.1	
	공원	4,595.5	－	4,595.5	5.8	
택지 (획지)	소 계	55,601.1	－	55,601.1	70.6	
	2-1	12,674.3	－	12,674.3	16.1	
	2-2	14,093.1	－	14,093.1	17.9	
	2-3	24,465.3	－	24,465.3	31.1	
	2-4	4,295.9	－	4,295.9	5.4	
	2-5	72.5	－	72.5	0.1	대토부지

(나)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: 변경없음

① 도로: 변경없음

- 도로 결정조서

구분	규 모				기능	연장 (m)	위치		사용 형태	주요 경과지	최초 결정일	비고
	등급	류별	번호	폭원(m)			기정	중점				
기정	중로	1	443	21 (10.5)	집분산 도로	82	증산동 198-6구 일원	증산동 198-7구 일원	일반 도로	-	서고제2008-173호 (08.05.22)	
기정	중로	1	444	21	집분산 도로	1,480 (480)	증산동 222-4대 일원	증산동 158-26 일원	일반 도로	-	서고제2008-173호 (08.05.22)	
기정	중로	2	467	15	국지 도로	619 (113)	수색동 145-2대 일원	수색동 218-8대 일원	일반 도로	-	서고제2008-173호 (08.05.22)	
기정	중로	2	469	15 (7.5)	국지 도로	132	증산동 219-28대 일원	증산동 219-15대 일원	일반 도로	-	서고제2008-173호 (08.05.22)	
기정	중로	2	475	15 (7.5)	특수 도로	41	증산동 32-34대 일원	증산동 217-32대 일원	보행자 도로	-	서고제2008-173호 (08.05.22)	
기정	중로	3	458	12	국지 도로	27	증산동 217-4대 일원	증산동 217-1대 일원	일반 도로	-	서고제2008-173호 (08.05.22)	
기정	중로	3	459	12	국지 도로	104	증산동 233도 일원	증산동 233도 일원	일반 도로	-	서고제2008-173호 (08.05.22)	
기정	소로	1	1	10~15 (15)	국지 도로	154 (70)	증산동 24-3대 일원	증산동 216-14대 일원	일반 도로	-	서고제2008-173호 (08.05.22)	
기정	소로	1	3	6~10	특수 도로	150	증산동 217-28대 일원	증산동 217-4대 일원	보행자 도로	-	서고제2008-173호 (08.05.22)	
기정	소로	1	4	10	특수 도로	180	증산동 236도 일원	증산동 233도 일원	보행자 도로	-	서고제2008-173호 (08.05.22)	

※ ()는 구역내 폭원 및 연장임

② 공원: 변경없음

- 공원 결정조서

구분	도면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종류	위치	면 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2	공원	어린이공원	증산동 211-11대 일원	4,595.5	-	4,595.5	서고제2008-173호 (08.05.22)	

(다) 건축물의 정비·개량 및 건축시설계획: 변경

① 기존건축물의 정비·개량계획: 변경없음

결정 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구분		위치	정비개량계획(동)					비고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계	존치	개수	철거후신축	철거이주	
기정	증산2 재정비 촉진구역	78,755.2	계	55,601.1	증산동 216	246	-	-	246	-	
			2-1	12,674.3							
			2-2	14,093.1							
			2-3	24,465.3							
			2-4	4,295.9							
			2-5	72.5							

② 건축시설계획: 변경

결정 구분	구역구분		가구 또는 획지 구분		위치	용적률산정용 연면적(㎡)	주된용도	건폐율 (%)	용적률 (%)	평균층수/ 최고층수	
	명칭	면적(㎡)	명칭	면적(㎡)							
기정	증산2 재정비 촉진구역	78,755.2	소계	55,601.1							
			2-1	12,674.3	-	126,903	공동주택	50%이하	247.7% 이하	22/30 (92m 이하)	
			2-2	14,093.1	-						
			2-3	24,465.3	-						
			2-5	72.5	-	-	공동주택	50%이하	247.7% 이하	22/30 (92m 이하)	
			2-4	4,295.9	-	12,496	복합용도	60%이하	290.9% 이하	-/25 (90m 이하)	
변경	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	구 분			세대수						
					기정		변경		변경후		
		2-1 2-2 2-3	건립예정 세대수 소계			1,254		증) 2		1,256	
			전용면적 40㎡이하			98		-		98	
			전용면적 40~50㎡			42		-		42	
			전용면적 50~60㎡			267		-		267	
			전용면적 60~85㎡			847		증) 2		849	
			전용면적 85㎡초과			-		-		-	
		2-4	건립예정 세대수 소계			132		-		132	
			전용면적 40㎡이하			16		-		16	
			전용면적 40~50㎡			57		-		57	
			전용면적 50~60㎡			59		-		59	
		■주택의 규모별 건설계획 적용기준									
· 전체 세대수의 20%이상을 전용면적 60㎡이하로 건설(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11조2호 기준준수)											
· 전체 세대수의 60%이상을 전용면적 85㎡이하로 건설(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1항1호 기준준수)											
· 소형주택 공급확대를 위한 기준용적률 상향으로 증가하는 세대수는 전용면적 60㎡이하로 건설하여야 함.											
※ 2-4의 주된용도 중 업무시설은 오피스텔을 제외한 용도를 뜻함.											
※ 2-5는 『주택법 시행령』 제6조의 부대시설(경비실,대문) 부지로서 증산2구역에 일부 포함되어 멸실된 청구아파트의 경비실 및 대문을 설치하고자 획지를 계획											
기정	건축물의건축선에관한계획	· 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한계선 6m(연도형 상가 구성 시 대지경계선으로부터 2m 이격)									

(라) 정비사업 시행계획: 변경없음

(마)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: 변경없음

다) 증산4~5 재정비촉진구역: 변경없음

라) 수색1 존치관리구역: 변경없음

마.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조서 : 변경없음

- 1) 재정비촉진지구 결정: 변경없음
- 2) 용도지역 결정: 변경없음
- 3) 도시계획시설 결정: 변경없음
- 4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: 변경없음
- 5) 수색1촌치관리구역 지구단위계획 결정: 변경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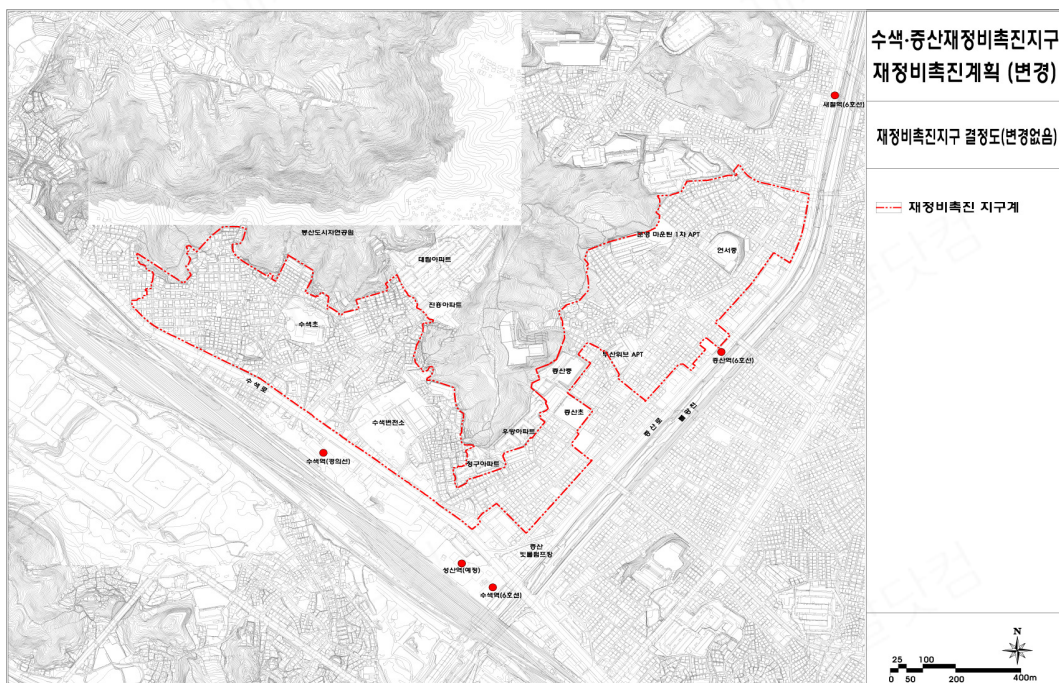
바.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사항은 「수색·증산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
도서」에 명시

사. 관계도면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(변경)도서 참조
: 생략(비치한 도서와 같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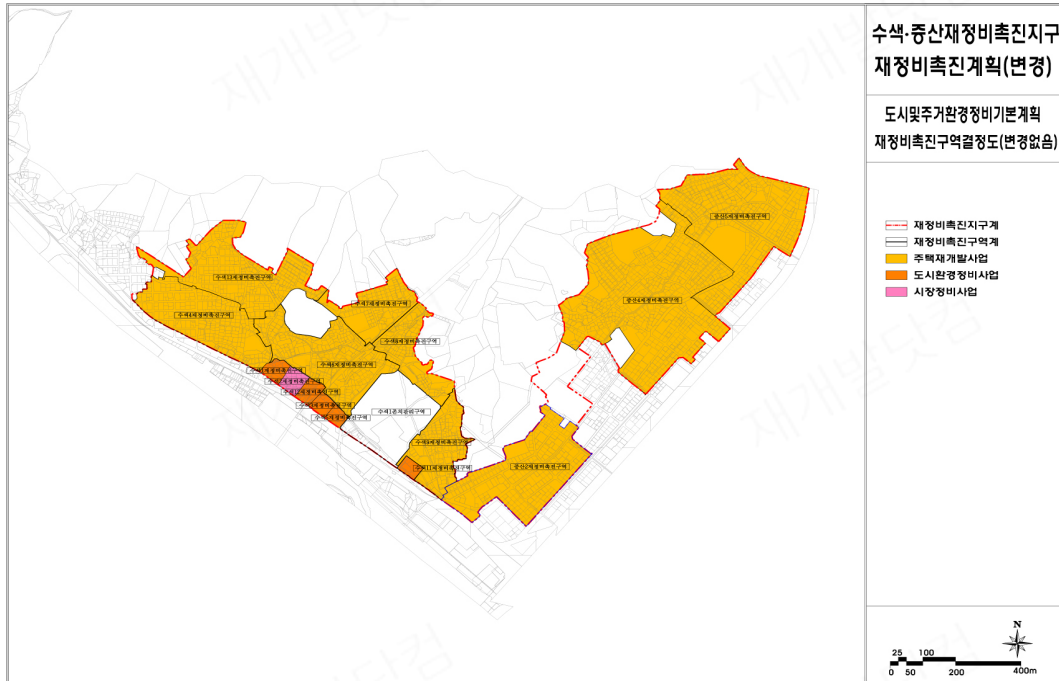
※ 첨부된 “결정 및 지형도면은 참고용 도면이므로 측량,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”

아.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(☎ 02)2133-7218) 및 은평구 도시계획과(☎ 02)351-7423)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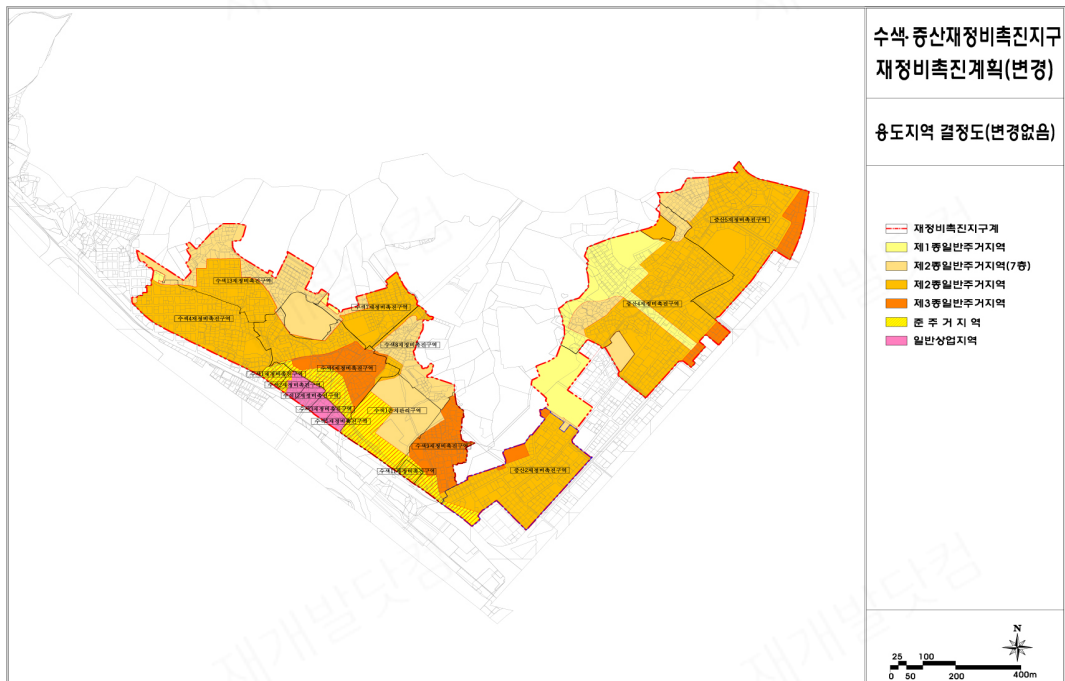
■ 수색·증산재정비촉진지구 결정도: 변경없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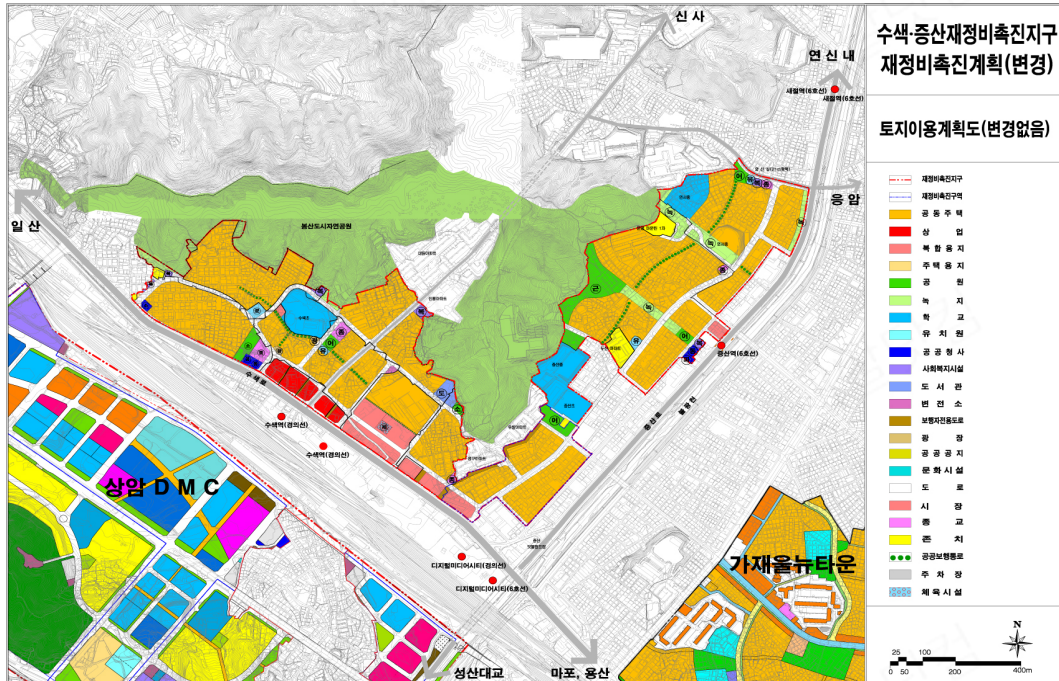
■ 수색·증산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: 변경없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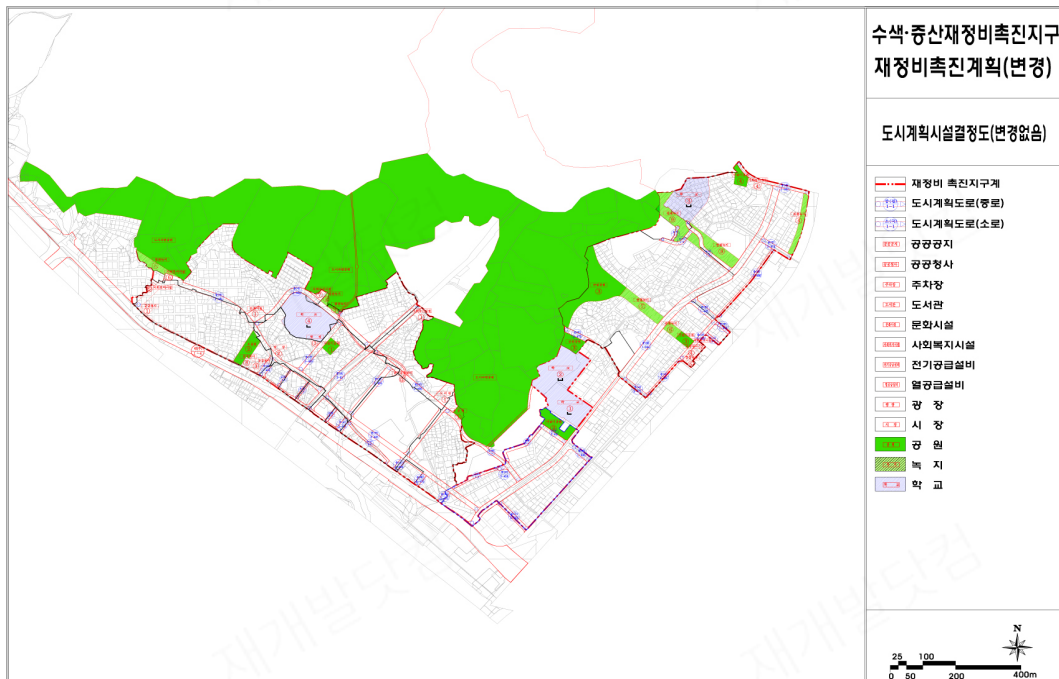
■ 수색·증산재정비촉진지구 용도지역 결정도: 변경없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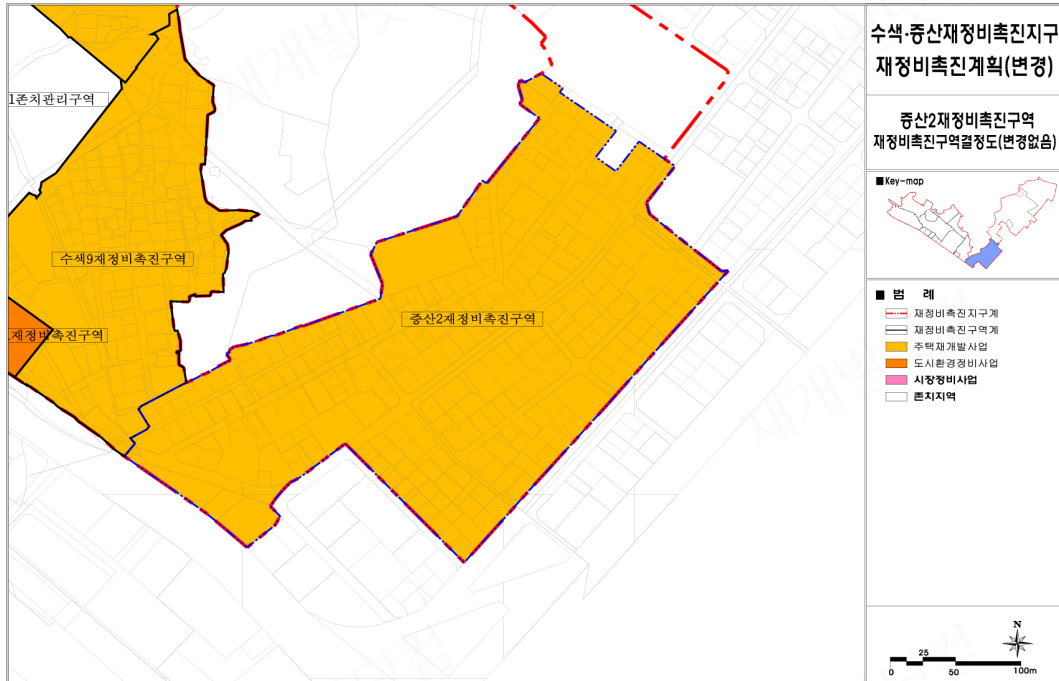
■ 수색·증산재정비촉진지구 토지이용계획도: 변경없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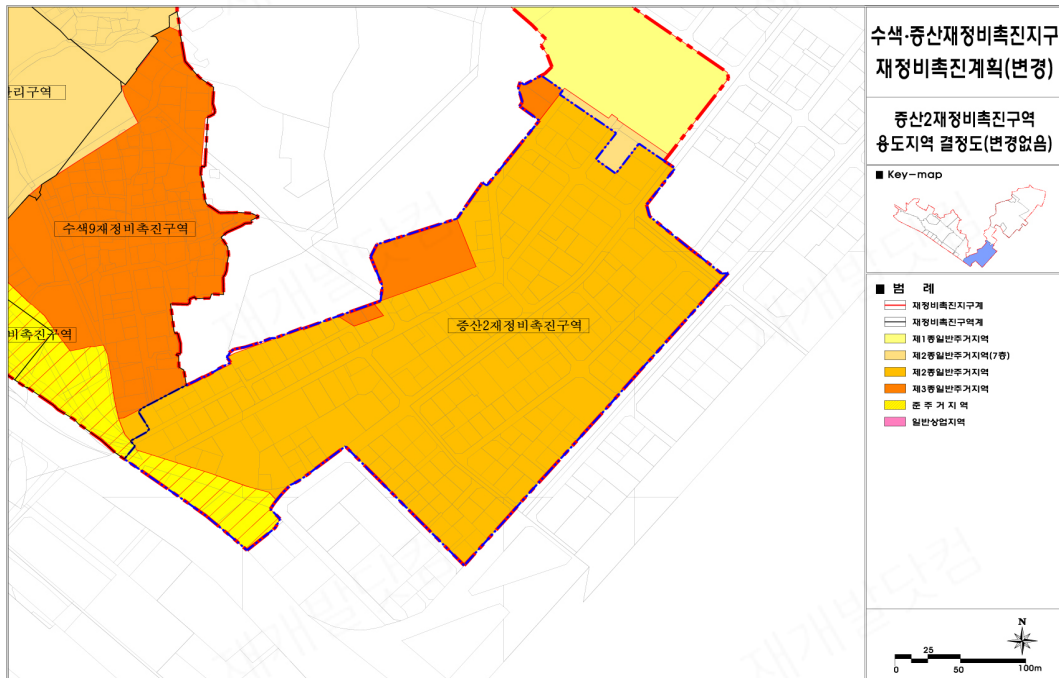
■ 수색·증산재정비촉진지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: 변경없음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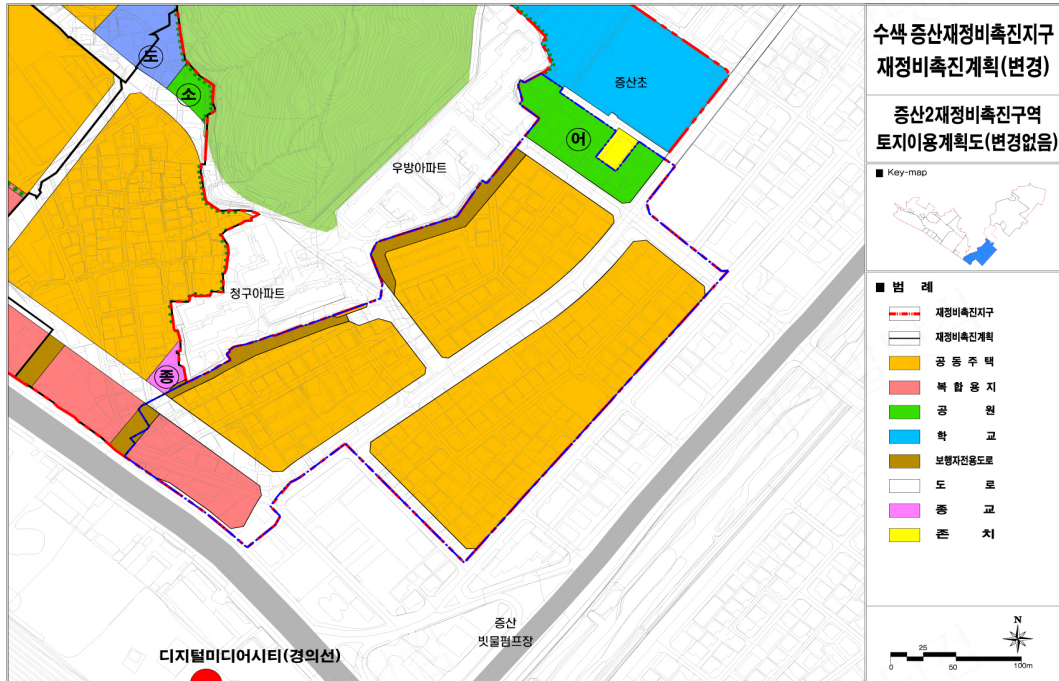
■ 증산2 재정비촉진구역 결정도: 변경없음



■ 증산2 토지이용 계획도: 변경없음



■ 증산2 토지이용 계획도: 변경없음



■ 증산2 도시계획시설 결정도: 변경없음

